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 11. 15 선고 2015가단39115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대구신용보증재단

피고1. 주식회사 A

2. B

3. C

4. D

변론 종결2016. 9. 27.

판결 선고2016. 11. 15.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947,467원 및 그중 25,921,447원에 대하여 2015. 9. 3.부터 2015. 11. 2.까지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과 피고 C 사이에 2015. 6. 2.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C은 피고 B에게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 6. 4. 접수 제8830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가. 피고 B과 피고 D 사이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3. 26. 체결된 매매계약을 26,947,467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나. 피고 D은 원고에게 26,947,46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5. 29.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 회사의 대구은행에 대한 3,000만 원의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보증금액 25,500,000원, 보증기한 2013. 5. 22.(이후 2015. 5. 20.까지로 연장됨)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신용보증약정에 관하여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위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행금액 외에 이행일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한 이율에 따른 손해금, 기타 비용 등을 지급하게 되어 있고, 원고가 정한 손해금율은 연 12%이다.

다. 이후 원고는 보증사고를 발생시킨 피고 회사를 대위하여 2015. 9. 3. 대구은행에 25,921,447원을 변제하였고, 그 외 대지급금 886,650원, 미수추가보증료 139,370원이 발생하였다.

라. 피고 B은 자신이 1/2 지분을 보유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1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5. 6. 2. 피고 C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 6. 4. 접수 제88306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마. 또한, 피고 B은 자신이 소유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2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5. 3. 26. 피고 D과 매매대금 1억 2,000만 원인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이 사건 매매계약과 설정계약 당시 피고 B은 채무초과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대구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월배농업협동조합, 한국신용정보원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결과, 국토교통부, 법원행정처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구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 피고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947,467원(= 대위변제금 25,921,447원 + 대지급금 886,650원 + 미수추가보증료 139,370원)과 그중 대위변제금 25,921,447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5. 9. 3.부터 위 피고들에 대한 소장 부분 송달일인 2015. 11. 2.까지 약정 손해금율인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사해행위취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과 설정계약 당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아직 발생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되어 있었고, 그로부터 약 3~5개월 후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발생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원고가 피고 회사를 대위하여 대출금을 변제하고 피고 B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피고 B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과 설정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킨 행위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피고 B와 수익자인 피고 C, D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피고 C, D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C은, 제1 부동산 중 피고 B의 1/2 지분 가액은 1억 2,800만 원인데, 이 사건 설정계약 이전인 2015. 5. 8. 채권최고액 1억 9,440만 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위 지분 가액을 초과하므로, 이 사건 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채무자가 양도한 목적물에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고 그 피담보채권액이 목적물의 가격을 초과하고 있는 때에는 그 목적물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지만, 이러한 판단을 함에 있어서 채무자와 제3자의 공유인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담보채무는 각 공유지분의 비율에 따라 분담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다39068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제1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설정계약 이전인 2015. 5. 8. 채권최고액 1억 9,440만 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 제1 부동산 중 피고 B 지분의 가액이 이 사건 설정계약 무렵인 2015. 10. 2. 기준 1억 2,800만 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 B의 지분이 부담하는 피담보채무는 채권최고액을 기준으로 그 1/2인 9,720만 원으로서 지분 가액에 미치지 못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 C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D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D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선의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D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1) 먼저 이 사건 설정계약의 경우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 C은 피고 B에게 이 사건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하여 보건대,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와 같은 가액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33734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인 2015. 5. 20. 제2 부동산에 관하여 기존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의 근저당권이 말소되었고, 당시 피담보채무액이 18,210,811원인 사실,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제2 부동산의 가액이 1억 2,000만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가 구하는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26,947,467원과 제2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인 101,789,189원(= 1억 2,000만 원 - 18,210,811원) 중 적은 금액인 26,947,467원의 범위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26,947,467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권민오

별지